

## 2021) 건축기사 4주완성 4차 정오표[2021.8.9]

## [V. 건축법규]

페이지	항 목	오	정
793	01. 총칙, 건축물의 건축, 건축물의 유지관리 핵심기출문제 7번 보기 수정	②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.	② 리빌딩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.

2021) 건축기사 4주완성 3차 정오표[2021.2.22]

[Ⅲ. 건축구조]

페이지	항 목	오	정
613	08. 강구조 개론 핵심기출문제 64번 정답 변경	63. ④ 64. ④ 65. ② 66. ③	63. ④ 64. ③ 65. ② 66. ③

[Ⅳ. 건축설비]
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								
723	03. 전기설비 Ⅰ - 1 - 1)항 표 내용 변경	■ 전압의 종류[한국전기설비 규정(KEC), 20.12.3 개정]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 \ 종류</th> <th>저 압</th> <th>고 압</th> <th>특별고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직 류</td> <td>1,500V 이하</td> <td>1,500~7,000V</td> <td>7,000V 초과</td> </tr> <tr> <td>교 류</td> <td>1,000V 이하</td> <td>1,000~7,000V</td> <td>7,000V 초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 \ 종류	저 압	고 압	특별고압	직 류	1,500V 이하	1,500~7,000V	7,000V 초과	교 류	1,000V 이하	1,000~7,000V	7,000V 초과
	구분 \ 종류	저 압	고 압	특별고압											
직 류	1,500V 이하	1,500~7,000V	7,000V 초과												
교 류	1,000V 이하	1,000~7,000V	7,000V 초과												
03. 전기설비 핵심 PLUS 1번 보기 수정	① 교류 300V 이하, 직류 600V 이하 ② 교류 600V 이하, 직류 300V 이하 ③ 교류 600V~7,000V, 직류 750V~7,000V ④ 교류 750V~7,000V, 직류 600V~7,000V	① 교류 300V 이하, 직류 600V 이하 ② 교류 600V 이하, 직류 300V 이하 ③ 교류 1,000V~7,000V, 직류 1,500V~7,000V ④ 교류 1,500V~7,000V, 직류 1,000V~7,000V													

[Ⅴ. 건축법규]

페이지	항 목	오	정
774	01. 총칙 4) 건축법 적용의 완화 ①항 수정	① 건축주, 설계자, 공사시공자,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시 건축법 규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(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에게 요청할 수 있다.	① 건축주, 설계자, 공사시공자,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시 건축법 규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(특별시장, 광역시장, <b>특별자치시장</b> 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에게 요청할 수 있다.
793	01. 총칙 핵심기출문제 7번 보기 수정	②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.	② <b>리빌딩</b> 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.
805	02.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핵심 PLUS 14번 그림 수정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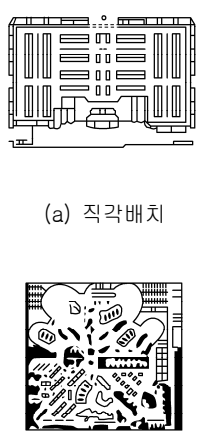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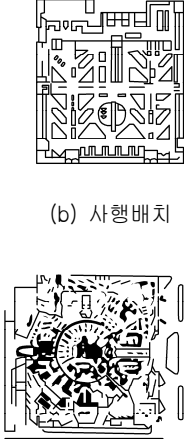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66	04. 특별건축구역 보칙 등 2) - ① - ㉠항 수정	㉠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. ·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%를 초과하는 면적 ·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	㉠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. ·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%를 초과하는 면적 ·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<b>6m</b> 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10	06. 국토의 계획 ⑤ - 1항 표 내용 수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용도지역</th> <th>용도지구</th> <th>용도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정수</td> <td>4(세분 지정)</td> <td>9(세분 지정)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관련법</td> <td>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</td> <td>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</td> <td>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</td> </tr> <tr> <td>지정자</td> <td>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·대도시시장</td> <td>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·대도시시장</td> <td>국토교통부장관 <b>해양수산부장관</b> <b>시·도지사·</b> <b>대도시시장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용도지역	용도지구	용도구역	지정수	4(세분 지정)	9(세분 지정)	4	관련법	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	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	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	지정자	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·대도시시장	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·대도시시장	국토교통부장관 <b>해양수산부장관</b> <b>시·도지사·</b> <b>대도시시장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용도지역	용도지구	용도구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정수	4(세분 지정)	9(세분 지정)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법	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	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	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정자	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·대도시시장	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·대도시시장	국토교통부장관 <b>해양수산부장관</b> <b>시·도지사·</b> <b>대도시시장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20	06. 국토의 계획 ⑧ - 2항 표 내용 수정	<p>※ 20.12.10 시행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용도지역 구분</th> <th>용적률의 최대한도</th> <th>지역의 세분</th> <th>용적률의 세분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상업 지역</td> <td rowspan="2">1,500%</td> <td>중심상업지역</td> <td><b>200</b>~1,500%</td> <td rowspan="4">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용적률의 120%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.</td> </tr> <tr> <td>일반상업지역</td> <td><b>200</b>~1,300%</td> </tr> <tr> <td>유통상업지역</td> <td>200~1,100%</td> </tr> <tr> <td>근린상업지역</td> <td>200~90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공업 지역</td> <td rowspan="2">400%</td> <td>준공업지역</td> <td><b>150</b>~400%</td> </tr> <tr> <td>일반공업지역</td> <td><b>150</b>~350%</td> </tr> <tr> <td>전용공업지역</td> <td>150~30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6">도시 지역</td> <td rowspan="6">500%</td> <td>준주거지역</td> <td>200~500%</td> <td rowspan="3">제1종, 2종, 3종으로 구분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일반 주거 지역</td> <td>제1종</td> <td>100~200%</td> </tr> <tr> <td>제2종</td> <td><b>100</b>~250%</td> </tr> <tr> <td>제3종</td> <td><b>100</b>~30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전용 주거 지역</td> <td>제1종</td> <td>50~100%</td> <td rowspan="2">제1종, 2종으로 구분</td> </tr> <tr> <td>제2종</td> <td>100~15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녹지 지역</td> <td rowspan="3">100%</td> <td>생산녹지지역</td> <td>50~100%</td> </tr> <tr> <td>자연녹지지역</td> <td>50~100%</td> </tr> <tr> <td>보전녹지지역</td> <td>50~8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용도지역 구분	용적률의 최대한도	지역의 세분	용적률의 세분	비고	상업 지역	1,500%	중심상업지역	<b>200</b> ~1,500%	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용적률의 120%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.	일반상업지역	<b>200</b> ~1,300%	유통상업지역	200~1,100%	근린상업지역	200~900%	공업 지역	400%	준공업지역	<b>150</b> ~400%	일반공업지역	<b>150</b> ~350%	전용공업지역	150~300%	도시 지역	500%	준주거지역	200~500%	제1종, 2종, 3종으로 구분	일반 주거 지역	제1종	100~200%	제2종	<b>100</b> ~250%	제3종	<b>100</b> ~300%	전용 주거 지역	제1종	50~100%	제1종, 2종으로 구분	제2종	100~150%	녹지 지역	100%	생산녹지지역	50~100%	자연녹지지역	50~100%	보전녹지지역	50~80%
용도지역 구분	용적률의 최대한도	지역의 세분	용적률의 세분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업 지역	1,500%	중심상업지역	<b>200</b> ~1,500%	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용적률의 120%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일반상업지역	<b>200</b> ~1,3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통상업지역	200~1,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린상업지역	200~9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업 지역	400%	준공업지역	<b>150</b> ~4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일반공업지역	<b>150</b> ~3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용공업지역	150~3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시 지역	500%	준주거지역	200~500%	제1종, 2종, 3종으로 구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일반 주거 지역	제1종		100~2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제2종		<b>100</b> ~2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제3종	<b>100</b> ~3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전용 주거 지역	제1종	50~100%	제1종, 2종으로 구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제2종	100~1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녹지 지역	100%	생산녹지지역	50~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자연녹지지역	50~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보전녹지지역	50~8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과년도 출제문제]
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																				
172	2018년 1회 71번 보기 및 해설 수정	① 교류 300[V] 이하, 직류 600[V] 이하 ② 교류 600[V] 이하, 직류 600[V] 이하 ③ 교류 600[V] 이하, 직류 750[V] 이하 ④ 교류 750[V] 이하, 직류 750[V] 이하 [해설] 전압 구분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교류</th> <th>직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저압</td> <td>600V 이하</td> <td>750V 이하</td> </tr> <tr> <td>고압</td> <td>600~7,000V</td> <td>750~7,000V</td> </tr> <tr> <td>특고압</td> <td>7,000V 초과</td> <td>7,000V 초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교류	직류	저압	600V 이하	750V 이하	고압	600~7,000V	750~7,000V	특고압	7,000V 초과	7,000V 초과	① 직류 400[V] 이하, 교류 400[V] 이하 ② 직류 400[V] 이하, 교류 600[V] 이하 ③ 직류 <u>1000</u> [V] 이하, 교류 <u>1500</u> [V] 이하 ④ 직류 <u>1500</u> [V] 이하, 교류 <u>1500</u> [V] 이하 [해설] 전압 구분 [한국전기설비 규정(KEC), 20.12.3 개정]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교류</th> <th>직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저압</td> <td><u>1,000</u>V 이하</td> <td><u>1,500</u>V 이하</td> </tr> <tr> <td>고압</td> <td><u>1,000</u>~7,000V</td> <td><u>1,500</u>~7,000V</td> </tr> <tr> <td>특고압</td> <td>7,000V 초과</td> <td>7,000V 초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교류	직류	저압	<u>1,000</u> V 이하	<u>1,500</u> V 이하	고압	<u>1,000</u> ~7,000V	<u>1,500</u> ~7,000V	특고압	7,000V 초과	7,000V 초과
구분	교류	직류																									
저압	600V 이하	750V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
고압	600~7,000V	750~7,000V																									
특고압	7,000V 초과	7,000V 초과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교류	직류																									
저압	<u>1,000</u> V 이하	<u>1,500</u> V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
고압	<u>1,000</u> ~7,000V	<u>1,500</u> ~7,000V																									
특고압	7,000V 초과	7,000V 초과																									
220	2018년 4회 46번 해설 변경	㉠ A지점 : 수평반력(←)과 수직반력(↑)이 작용하므로 이 힘을 부담하는 AC와 AF는 부재력이 있고 AD는 0부재 ㉡ B지점 : 수직반력(↑)이 작용하므로 이 힘을 부담하는 BE부재는 부재력이 있으며 BF부재는 AF의 부재력과 동일하며 BD부재는 0부재 ㉢ F점 : AF와 BF부재는 동일한 부재력이고 FD부재는 0부재	㉠ <u>C지점 : 수평반력(←)과 수직반력(↑)이 작용하므로 이 힘을 부담하는 AC와 AF는 부재력이 있고 AD는 0부재</u> ∴ AC = 0 ㉡ <u>E지점 : 수직반력(↑)이 작용하므로 이 힘을 부담하는 BE부재는 부재력이 있으며 BF부재는 AF의 부재력과 동일하며 BD부재는 0부재</u> ∴ DE = 0 ㉢ F점 : AF와 BF부재는 동일한 부재력이고 FD부재는 0부재																								

2021 건축기사 4주완성 2차 정오표 [2021.2.9]

- 과년도출제문제 -

페이지	항 목	오	정
235	2019년 1회 3번 해설 그림 교체	 <p>(a) 직각배치 (c) 자유유선형배치</p>	 <p>(b) 사행배치 (d) 방사형배치</p>

2021 건축기사 4주완성 1차 정오표 [2021.1.25]

- Ⅲ. 건축구조 -

페이지	항 목	오	정
과년도 43	2016년 2회 54번 해설 수정	<p>해설 인장재 순단면적(<math>A_n</math>)</p> $A_n = (h - nd_0 + \frac{s^2}{4g})t$ <p> <math>h = 40 + 40 + 40 + 80 = 200(\text{mm})</math>  <math>n = 3</math>  <math>d_0 = 22 + 2 = 24(\text{mm})</math>  <math>g_1 = 40(\text{mm})</math>  <math>g_2 = 80(\text{mm})</math>  <math>s = 80(\text{mm})</math> </p> $A_n = \left\{ 200 - (3 \times 24) + \left( \frac{80^2}{4 \times 40} + \frac{80^2}{4 \times 80} \right) \right\} \times 6$ $= 1,116(\text{mm}^2)$	<p>해설 인장재 순단면적(<math>A_n</math>)</p> $A_n = (h - nd_0 + \frac{s^2}{4g})t$ <p> <math>h = 40 + 40 + 40 + 80 = 200(\text{mm})</math>  <math>n = 3</math>  <math>d_0 = 22(\text{mm})</math>  <math>g_1 = 40(\text{mm})</math>  <math>g_2 = 80(\text{mm})</math>  <math>s = 80(\text{mm})</math> </p> $A_n = \left\{ 200 - (3 \times 22) + \left( \frac{80^2}{4 \times 40} + \frac{80^2}{4 \times 80} \right) \right\} \times 6$ $= 1,164(\text{mm}^2)$